

부산지방병무청 일반직공무원(공업서기, 전기)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부산지방병무청 일반직공무원(공업서기, 전기)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8년 5월 14일
부산지방병무청장

1.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

| 채용분야 | 직급 | 인원 | 근무예정기관 |
|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-|
| 공업 (전기) | 공업서기 | 1 | 부산지방병무청 |

2. 담당 직무내용

- 청사 전기시설 및 소방설비 등 유지·관리
-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 등

3. 근거 법령

-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
-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
-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
-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규정

4. 응시자격요건

가. 공통 응시자격 요건 : 최종(면접) 시험 예정일 기준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<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>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)
 - * 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)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.
- 지역(거주지) 및 학력 : 제한없음
- 18세 이상(2000. 12. 31. 이전 출생자)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
 - ※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(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)이 가능한 자

나. 응시자격 요건 : 최종(면접) 시험일 예정일 기준

☞ 채용직급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

| 채용직급 | 자격 요건 |
|--------------|--|
| 공업서기 (전기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기응용기술사, 전기안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•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• 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소지자 • 전기산업기사(3년), 전기공사산업기사(3년) 자격증 소지자 • 전기기능사(4년) 자격증 소지자 • 관련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(2년) <p>※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,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</p> <p>※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는 입상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</p> |

*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, 관련분야(전기시설의 유지·보수·관리)의 국가, 공공기관, 법인(외국법인 포함) 및 민간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함)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,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
다. 우대 요건 : 서류전형 시 반영 ☞ “원서접수마감일” 기준

- ①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(전기시설의 유지·보수·관리)
 - △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 후 경력
 - △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은 근무경력에서 제외
- ② 업무관련 자격증 : 차등배점(기사>산업기사)
 - △ 승강기(산업)기사, 소방설비(산업)기사(전기분야)
- ③ 정보화 관련 자격증 :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
- ④ 사회봉사 및 헌혈 실적
 - △ 공고일 이전 실적만 인정(3년 이내 : '15.5.14.~ '18.5.13.)

| |
|---|
| ○ 봉사활동 |
| - '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'(www.vms.or.kr)에서 발행한 「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서」 |
| - '1365자원봉사'(www.1365.go.kr)에서 발행한 「자원봉사 실적 확인서」 |
| ※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|
| ○ 헌혈 : '대한적십자사'(www.bloodinfo.net)에서 발행한 「헌혈확인증명서」 |

라. 가산 요건 : 서류전형 시 반영 ☞ “원서접수마감일” 기준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(1급 > 2급 > 3급)
 - △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'14. 1. 1.이후 실시한 시험만 인정

【 공 통 】

-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
-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
 - ※ 단,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, 자격증 및 사회봉사 실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(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)
-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(기재내용 이외의 서류 첨부 등)

【 경력의 범위 】

- '경력'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, 관련분야(전기시설의 유지·보수·관리)의 국가, 공공기관, 법인(외국법인 포함) 및 민간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함)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,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- **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(재직) 증명서(근무기간, 직위(직급) 및 담당 업무 명시)를 제출하여야 함**
 - ※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,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
-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
 - ※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,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 (민법 제160조)

【 자격증의 범위 】

-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
 - ※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: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 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, **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**
- 2012. 1. 1. 이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으로 인정

【 사회봉사 및 헌혈실적 】

- 공고일 이전 실적만 인정(3년 이내 : 2015.5.14.~ 2018.5.13.)

【 가산 요건 】

- '한국사능력검정시험'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것만 인정
 - * 2014. 1. 1. 이후 응시자에 한함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등급,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

5. 시험 방법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서류전형 발표일(예정) : 2018. 6. 8.(금)
-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직무 적격성(잠재역량, 근무경력 등)을 서면으로 심사하여,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
 - *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
- 서류전형 시 경력 및 자격증 등 전형 기준
 - 경력(재직)증명서 중 근무분야(업무내용)가 명확하지 않거나,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등의 근무경력에 대한 재직기간과 근무시간이 표기(명시)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에서 제외
 -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
 - 2012. 1. 1. 이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1급 인정
 -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것만 인정
[원서접수 시 작성(제출)하지 않은 경력(증명서) 및 자격(증)은 인정 불가]
 -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산정 제외

서류전형 평가기준

-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
- 관련분야 경력(상근)
- 관련분야 자격증 : 승강기, 소방설비(전기분야) 산업기사 이상
- 업무지원 자격증 :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
- 사회봉사 및 헌혈
- 가점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
(국사편찬위원회 주관, 2014. 1. 1. 이후 실시 시험만 인정)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일자/장소 : 2018. 6. 15.(금), 부산지방병무청 소회의실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
- 평가기준 :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, 중, 하로 평정

※ 평정요소(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|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|
|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|
|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| |

- 합격자 결정방법
 - △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
 - △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,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“상”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, “상”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“중”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
- 합격자 부산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(유선) 통보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응시원서 교부

- 병무청 홈페이지,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

※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「응시원서 서식」을 출력하여 사용

나. 접수 기간 : 2018. 5. 21.(월) ~ 5. 25.(금) / 4일간

- 접수시간 : 09:00 ~ 18:00 (중식시간 : 12:00 ~ 13:00 제외)
- *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

다. 접수 장소

- 방문접수 : 부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
- 우편접수 : (48208)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(* 봉투에 '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증' 표기)

라. 접수 방법

-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
 - *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
 -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근무시간인 09:00~18:00(12:00~13:00 제외)내에 가능
 -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
 - *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(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)
- ※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

7. 제출 서류

| 구 분 | | 내 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공 통 서 류 | 1. 응시원서 1부 (붙임1) | ○ 정부수입인지 5,000원 부착 ※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(응시수수료)에 의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| 필수 |
| | 2. 이력서 1부 (별지 제1호) | ○ 이메일 주소,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| |
| | 3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 제2호) | ○ A4용지 2매 이내 작성 | |
| | 4.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 제3호) | ○ A4용지 3매 이내 작성 * 요약서 1매 포함 | |
| | 5. 관련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 | | |
| | 6. 동의서 각 1부 (별지 제4호, 제5호) |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| |
| | 7. 경력(재직) 증명서 (붙임2) | * 하단 참조 | |
| | 9. 주민등록 초본 1부 | *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| |
| | 개 별 서 류 | 10. 봉사 및 헌혈실적 | |
| 11. 자격증 등 사본 | | ○ 업무관련 또는 정보화 자격증 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* 국사편찬위원회 주관(2014. 1. 1. 이후 응시자에 한함) | |

< 경력(재직)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>

- 상근 여부 및 근무형태(종일제, 반일제, 격일제 등) 반드시 기재
- 재직기간(연월일까지 기재), 인사 변동사항, 직위, 담당업무 내용, 발급기관(회사)명, 직인,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(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)
- **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**
- **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**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
8. 시험일정 및 합격자 결정

가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(예정) : 2018. 6. 8.(금)

- 병무청 홈페이지,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

나. 면접시험일(예정) : 2018. 6. 15.(금)

- 면접일시,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

다. 최종 합격자 발표(예정) : 2018. 6. 27.(수)

- 병무청 홈페이지,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
- *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(예정)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사전에 병무청홈페이지에 게시

9. 기타(유의) 사항

- 가.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(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·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,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될 수 있습니다.

- 다.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마.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바. 전형(서류전형, 면접시험)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사.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아.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자.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예: 학위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- 차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카.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타. 이력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파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(☎051-667-522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5. 14.

부 산 지 방 병 무 청 장